

WTO 체제의 출범과 무역·환경논의 동향(下)

이 자료는 지난 5월 25일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내외 환경동향과 한국산업의 선택'에 관한 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옮긴 것이다. <편집자註>

金 峻 漢

<산업연구원 환경·소재산업연구실장>

Ⅲ. 환경경영국제규격(ISO 14000 시리즈)의 제정

1. ISO 14000 시리즈의 추진현황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에는 9개의 환경관련 기술위원회(TC: Technical Committee)가 있다. 이중 TC207(환경경영)은 기업의 경영자가 환경보전 및 관리를 경영목표로 채택하여 인적, 물적, 관리적 기법을 전사적으로 활용, 이행하고 그 내용을 주기적으로 공표함과 아울러 제3의 환경감사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도록 하는 인증 및 감사 규격과 기술개선기법 규격, 그리고 기본규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규격이 ISO 14000 시리즈이다. 우리나라는 1993년 환경관련 ISO/TC의 대부분에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규격초안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ISO에 통보하고 있다.

ISO는 1991년 유엔환경개발위원회(UNCED) 산하에 설치된 지속발전을 위한 산업계 회의(BCSD)의 요청에 의해 환경경영표준화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는 국가마다 서로 다른 환경관리기법과 관리체계를 통일할 필요가 있고,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각국의 환경관련 규격을 조화시킬 필요가 커졌으며, 각국의 환경관련법률이 강화되어 야기되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업의 자율적인 환경관리체제 구축과 환경관리기술 향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예를 들어 환경마크제도의 경우, 독일, 캐나다, 미국, 일본 등 22개국에서 각기 독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ISO는 약 2년간의 검토를 거쳐 환경경영표준화(ISO 14000 시리즈)를 전담할 기술위원회인 TC207을 1993년에 설치하였다. 또한 표준화를 위한 7개의 주제를 선정하고 이들을 전담할 하부조직인 부회(SC: Sub-Committee)

를 구성하여 현재 일부 부회는 담당주제에 대한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 현재 ISO/TC207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34개국이 정회원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총사무국은 캐나다에 있다. ISO의 환경경영표준화는 주제에 따라 1996~98년 완료를 목표로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2. ISO 14000 시리즈의 주요 내용

ISO 14000 시리즈를 제정함에 있어 기본정신은 기업의 자율성, 지속적인 개선, 그리고 대중에의 신뢰성 등에 두고 있다. 또한 지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예방적이며 자발적인 수단으로서, 제조업체 뿐만 아니라 병원, 백화점 등 서비스업종까지 포함하는 모든 조직체에 적용되게 된다. 따라서 ISO 14000 시리즈는 조직체의 종합적인 환경경영체제를 평가, 감사하고 인증할 수 있는 국제 환경보증 규격이며 지속적인 발전을 기할 수 있는 관리기법 규격이라고 할 수 있다.

ISO 14000 시리즈의 주요내용은 ① 조직체의 체계적인 환경경영 관리 활동 및 이를 제3자가 감시하는 방법과 상품자체의 환경성을 인증하는 규격 ② 조직체와 상품의 환경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킬 수 있는 기술적인 분석 및 평가기법에 대한 규격 ③ 용어 및

환경관련 ISO/TC 현황

TC명	국제 규격수	우리나라 가입구분
TC 146 (대기의 질)	21개 (1971년 설치)	정회원
TC 147 (수질)	59개 (1971년 설치)	정회원
TC 190 (토양의 질)	제정중 (1985년 설치)	정회원
TC 200 (고형 폐기물)	제정중 (1991년 설치)	정회원
TC 43 (소음)	97개 (1947년 설치)	부회원
TC 108 (기계적 진동)	48개 (1963년 설치)	부회원
TC 207 (환경경영)	제정중 (1993년 설치)	정회원
TC 198 (수소에너지)	제정중 (1990년 설치)	부회원
TC 203 (에너지관리기술)	제정중 (1991년 설치)	부회원

주 : ISO에는 산업분야별로 약 190개의 TC가 설치되어 활동중에 있음.

정의에 대한 기본규격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들 규격들은 최종단계에서 오염물질의 함량을 단순 반복적으로 측정, 분석해 온 기존의 환경관리개념에서 체계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초기단계에서부터 환경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평가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개념으로 전환하는 획기적인 기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가. 인증 및 감사 규격

(1) 환경경영체제에 대한 규격

여기서는 조직체가 환경경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할 때 갖추어야 할 17개의 주요 요건과 지침을 규정하게 된다.

이는 기업경영자가 환경관리를 기업경영의 최상위개념으로 채택하는 방향으로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기업내의 모든 인적, 물적자원을

을 체계적으로 활용하여 이를 행하며, 자율적인 환경관리진단활동을 한 후 그 내용을 보고서로 만들어 외부에 공표하고, 제3의 인증기관으로부터 심사를 받도록 하는 4단계의 기본절차로 구성된다. 또한 기업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 규격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침도 개발될 예정이다.

(2) 환경감사규격

여기에는 기업의 환경경영체제에 대한 감사 이외에 법규준수 및 환경관리성과 감사, 기업의 환경보고서에 대한 감사, 부지 및 설비에 대한 감사 등 다양한 감사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유형별 감사방법과 절차, 감사자의 자격요건 등도 규정하게 된다.

실례로 1993년 국내에 산업재해와 폭발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외국 보험사에서 환경안전인증을 요구

한 경우를 들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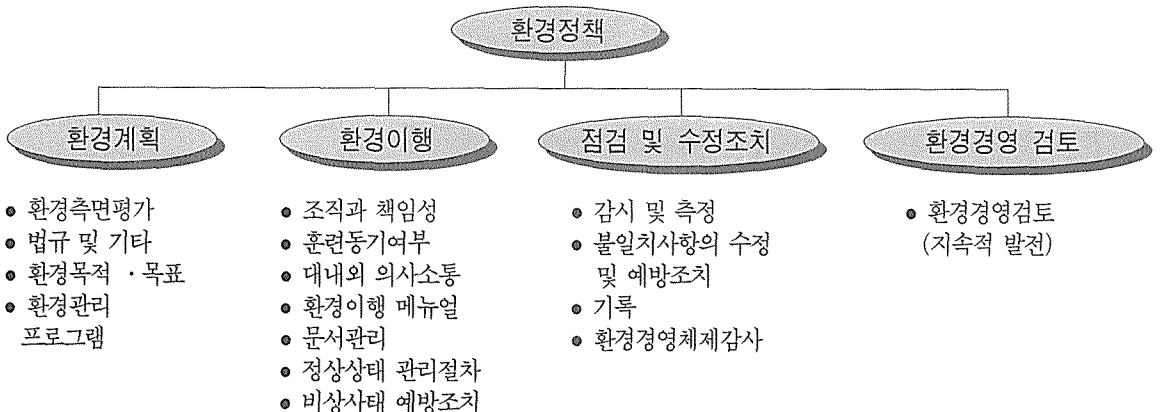
(3) 상품자체에 대해 환경성을 인증 하는 규격(환경라벨링 규격)

미리 설정된 기준에 의거하여 제조공정과 환경에의 영향 등 환경적 합성을 검토·분석하여 그 결과를 인증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는 것이다. 또한 환경성을 광고에 표시하는 문제와 상품에 부착하는 환경심볼에 대해서도 표준화하여 규정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 환경부가 시행하고 있는 환경마크 제도는 최종상품 자체의 환경성만을 검사하여 인증하고 있어 ISO의 표준화가 완료되면 제도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나. 환경관리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기법규격

(1) 환경성과 평가규격

환경경영체제규격의 주요관리항목



이는 기업의 환경관리에서 취약 분야와 환경리스크 정도를 판별하는 수단으로서, 관리체계 및 생산 분야에서의 환경관리항목과 목표치를 오염물질별로 정량화하고 이의 관리성과를 비교평가하는 방법과 지침에 대한 규격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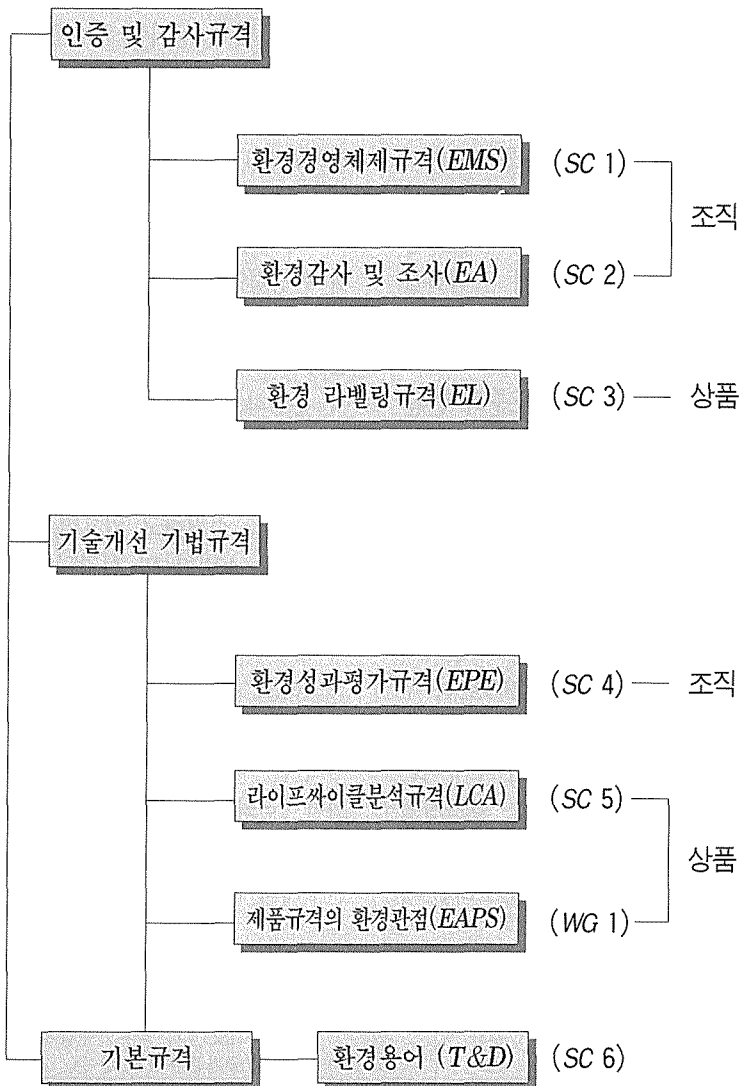
(2) 라이프사이클 분석규격
 상품 및 제조공정을 개발하거나 설계할 때 상품의 전생애, 즉 원자재, 생산, 유통, 소비, 재활용, 폐기 등의 단계별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분석하여 가장 환경친화적인 상품과 공정을 설계할 수 있

도록 하는 절차와 지침을 규격화하는 것이다.

(3) 제품표준에 있어서의 환경적 관점에 대한 규격

상품을 생산하는 방법과 상품의 품질상의 특성을 규정하는 상품규격서를 정할 때 환경적인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할 제반항목과 지침을 표준화하는 것이다.

ISO 14000 시리즈 규격체제



다. 기본규격

이는 환경용어의 정의와 수식, 기호 등을 규정한 규격이다.

3. 국별 환경경영표준화 동향

앞으로 국제환경경영 표준화 추세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EU간의 주도권 경쟁이 해소되고 태국, 말레이시아 등 일부 개도국도 최근 참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ISO/TC207 설치 이후 각국은 환경경영표준안을 경쟁적으로 제출하고 있다. 국제환경경영 표준화와 관련한 주요 선진국들의 최근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EU

EU는 환경경영 및 감사제도에

대한 법률을 1993년 공포한 후 1995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법률은 당초 강제규정으로 추진되었으나 기업의 반대로 인해 자주적인 참여조항으로 수정된 바 있는데, 앞으로 국별 기술수준차이에 대한 조정문제와 GR협상이 진전될 경우 3~5년 후부터는 강제조항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나. 미국

미국은 1993년에 미국국립표준원(ANSI)에서 ISO/TC207 설립을 정식 발의하였으며 향후 3~5년 이내에 전기업에 대해 외부환경감사 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있다.

현재 57개 주요업종중 66%가 내부 환경감사자를 두고 있고 80%는 내부 감사제도의 채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미국의 재료·시험협회(ASTM)내에 6개 환경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표준을 개발하고 있는데 현재 환경성능평가표준 등 173종을 보유하고 있다.

다. 일본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환경시험방법 규격은 정립되어 있으나 환경경영규격은 아직까지 없다. ISO/TC207 설치 이후 일본표준협회내에 경단련을 중심으로 한 대

책반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ISO/TC207/SC4의 전문가 회의에서 간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라. 여타 선진국

영국은 환경경영에 대한 국가규격(BS)을 1992년 3월 세계 최초로 공포하였는데 이는 현재 ISO의 규격초안 작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캐나다는 ISO/TC207의 사무국을 맡을 만큼 환경규격과 기술이 발전되어 있고 각 SC에 캐나다 규격모델(안)을 제시하는 등 ISO의 모든 주제에서 규격화를 리드해 가고 있다.

4. 우리나라의 환경표준화 현황

우리나라의 환경국가표준(KS)은 1960년대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180여개가 제정되어 있다. 주된 분야는 수질, 대기의 오염물질에 대한 시험분석 규격인데 이 분야의 시험분석 규격수준은 ISO보다 우수한 일본 수준이다. 그러나 토양 및 폐기물 분야의 시험분석 규격은 초보적인 단계, 그리고 환경경영 규격은 아직까지 없으며, 다만 제품규격에 환경적 측면이 고려된 경

우가 많이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폐수시험방법, 폐기물 샘플링 방법 등 8개규격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등 환경시험분석 방법 규격의 보완을 추진해 왔다. 또한 1993년 산업표준심의회내에 환경전문심의체제를 마련하고 환경부회와 부회내 6개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ISO 표준초안을 심의한 바 있다. 동시에 ISO표준초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전문위원회 별로 간사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ISO 14000 시리즈 제정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제 환경경영 표준화 대책반」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설치하고 산하에 5개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각국의 입장, ISO의 참고건의규격 등 국제문서를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을 정립하고 있으며, 기업, 민간단체, 소비자 및 환경단체, 학계 등 92개 기관의 23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주요국가의 환경경영관련 표준규격(안) 및 문서를 입수하여 편집·배포하고 설명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국제 환경경영 표준화 동향에 대한 산업계와 업계, 학계, 연구계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

수질 및 대기분야 규격수 비교

구분	KS	ISO	JIS	비고
수질	12	59	21	KS가 ISO보다 적용가능항목수가 많음(규격분류체계 상이)
대기	55	21	54	

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의 환경품질보증요구규격, 영국의 BS7750, 캐나다의 환경감사지침 등 주요선진국 및 ISO의 규격을 입수·편집하여 배포한 바 있다. 동시에 ISO 14000 시리즈 관련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각 부회에 정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우리나라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

5. ISO 14000 시리즈의 제정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ISO 14000 시리즈의 제정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 부정적인 측면

ISO의 환경검사규격 완료시점인 1995년 말부터는 무역거래에서도 점차 환경인증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초기단계에는 선진국과의 무역비중이 큰 기업과 현지 진출기업부터 상당한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추가적인 비용과 인력, 그리고 시간을 투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찍부터 자율적으로 환경경영체제를 도입해 온 외국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상당한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종별로는 환경오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석유화학산업을 필두로

ISO의 환경검사 규격 완료시점인 1995년 말부터는 무역거래에서도 점차 환경인증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양의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철강과 자동차산업, 유해화학물질을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하는 전기·전자산업, 그리고 생물다양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약업 등이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린라운드의 범위에 기업의 경영활동과 제조공정 및 방법, 상품의 환경적합성 등이 포함될 경우 실질적인 기술장벽수단으로 활용되어 국내 전 수출산업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클린턴 미행정부는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교역국들에게 무역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 4가지 경우를 마련하면서 상품의 공정 및 생산방법과 연관된 무역제재지침도 추가로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지침이 마련된다면 향후 세계무역기구(WTO)체제하에서 환경보호를 위해 국제적으로 허용될 각종 무역제재의 토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우리업체의 대미진출에 중대한 기술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편 상계관세의 부과수단으로 라이프사이클 분석기법이 적용될 경우 이 기법이 발달되지 않은 우리나라는 결국 환경적으로 덜 고려된 상품을 생산할 수 밖에 없어 경쟁력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 긍정적인 측면

현재 우리나라는 개도국 중에서는 ISO 14000 시리즈 제정에 가장 적극적인 참여활동을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대응 여하에 따라서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즉, 기업들이 사전대응체제를 마련하고 국제문서 등을 잘 분석하여 자사에 적합한 환경성과 분석이나 라이프사이클 분석기법 등을 산업활동에 활용하고 환경친화적인 공정과 상품의 생산을 유지할 수 있다면 오히려 산업발전과의 조화를 통해 환경관리기술의 국제화를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쟁국을 따돌리고 국제경쟁력을 유지·향상시키는데 기여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또한 환경기술개발 및 연구추진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환경관련산업의 발전 및 육성에도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신상품개발, 수질 등의 오염처리기술 및 저공해 제조공정기술을 발전시킴으로써 관련산업에의 파급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6. 대응방안

가. 환경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

가장 근본적인 대응은 결국 환경 기술의 개발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신수요 환경분야의 규격을 확충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 즉, 환경표준화에 대한 수요분석체제를 마련하여 과제를 발굴하고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표준화를 추진함으로써 규격의 선행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ISO, ASTM 등 외국규격과의 대비를 통해 KS규격의 국제화·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환경용어 등 기본규격을 제정하고 환경규격 핸드북을 발간하여 환경규격에 대한 수요 확대에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환경성이 우수한 제품의 보급도 촉진하여야 한다. 재활용품의 보급을 위해 KS규격 및 KS표시허가 기준을 단계적으로 제정하여 품질의 신뢰도를 높이고, 재활용품의 품질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분석기술의 개발연구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환경상품에 대한 KS규격도 제정 또는 보완해 나가되 ISO의 "제품규격화 시 환경적 관점"에 대한 지침규격이 완료되면 KS제품규격도 환경적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보아야 할 필요도 있다고 하겠다.

환경측정실험의 신속성과 정밀

ISO의 『제품규격화시 환경적 관점』에 대한 지침규격 완료되면 KS제품규격도 환경적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보아야 한다.

성도 증진되어야 할 것이다. 수질, 대기 등에 함유된 오염물질의 자동 측정기에 대한 규격을 확충하고, 표준가스 등 표준물질의 개발 및 인증을 확대하여 시험측정의 정밀도·신뢰성을 증진시키며 ISO/Guide 25 등에 의거한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를 확산하여 국내시험·검사기관의 품질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상호인증을 통해 시험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위해상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되어야 한다. 환경위해상품의 생산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식용부자, 건전지 등을 품질경영촉진법상의 사전검사 상품으로 지정하고 외국의 품목별 규제형태와 제도를 전면 조사하여 문제의 소지가 큰 품목을 선정해 둘 필요가 있다.

나. 환경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환경성과평가기법의 보급

환경성과평가기법도 보급해 나

가야 한다. 그 대상으로는 환경경영 목표달성을 위한 관리항목을 설정하고 항목별 관리절차와 성과를 분석하는 기법, 그리고 그리고 산업별로 환경오염 유발물질의 배출을 질적·양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필요한 항목 설정과 관리절차 및 성과를 분석하는 기법 등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전기·전자, 기계, 섬유 등 6개 산업에 대한 평가기법을 민간단체 및 표준화대책반이 공동으로 제정하여 산업계에 보급해야 할 것이다.

다. 환경적합형 상품 및 공정개발 기법에 대한 연구강화

환경에 적합한 상품 및 공정을 개발하는 기법도 연구하여야 한다. 원재료, 공정, 유통, 서비스, 제품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설계지침, 이를 위한 정성적·정량적인 데이터수집과 환경영향분석, 그리고 제품이 전생애를 살아가면서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요인을 분석하고 개선하는 방법 등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라이프사이클연구학회의 설립을 적극 유도하여 산업별 적용기법을 연구하고, 그 결과 산업계에 보급 확산시킬 방법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 국제환경표준화 활동에 적극 참여 및 국제협력 강화

현재 활동중인 산업표준심의회 산하 환경관련 6개 전문위원회의 심의활동을 강화함으로써 국제환경표준화 움직임을 계속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기능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환경표준화와 관련된 국제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되 사전에 회의의제와 국제문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조정하여 국내 입장을 정리하는 등 준비 역시 체계적으로 하여 최대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환경시험분석 및 환경경영관련 ISO/TC 및 SC회의에는 간사기관 및 기업을 중심으로 대표단을 구성하여 참석하고, 특히 환경경영표준화 국제 회의에는 실무초안이 마련되는 단계에서부터 국내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규격수준이 우위에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ISO에 규격화를 요청할 필요도 있다. 배기가스중 수은분석방법, 폐수중 알루미늄분석방법 등 수질 및 대기분야의 시험분석규격중 우리나라와 일본이 우위에 있거나 ISO에 없는 규격을 선정한 후 ISO의 해당 TC에 일본과 협력하거나 단독으로 발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일간에

국제환경표준화 동향에 대한 공동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고 정례 한·일 표준화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구체적으로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환경규격 협력창구를 두고 환경경영기법 기술에 대한 공동연구 및 연수, 국제환경표준화 동향에 대한 공동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고 정례 한·일 표준화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구체적으로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마. 환경경영주의 확산을 위한 여건의 조성

환경경영주의를 확산시키기 위해 환경경영학회 등 학회를 중심으로 심포지엄, 포럼 등을 개최하고 지역별 순회설명회, 간담회, “환경표준화 소식”지 발간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표준협회 교육과정에 계층별 환경경영의식 교육과정을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ISO의 환경경영체제 및 관리기법규격을 참조하여 환경경영추진 매뉴얼을 산업별로 제정하고, 선진국의 환경경영 우수기업에 대한 견

학을 추진하여 선진국의 세부기법을 습득하도록 유도할 필요도 있다. 경충을 중심으로 주요기업별, 업종단체별 추진조직의 설치를 유도하고 KS허가업체협의회 내에 환경경영추진대책위원회의 설치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바. 환경경영에 대한 국내인증의 실시

환경경영인증을 위한 국내의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현재 정부는 1996년 국내인증제도를 실시한다는 목표로 산업표준화법을 보완하여 인증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인증심사 운영요령을 제정중에 있다. 한편 정부에서는 환경경영 관련 규격의 KS화를 추진하기 위해 ISO추천규격 및 EU규정을 보완하여 국가잠정규격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환경경영 체제와 감사 등 일련의 ISO 규격이 완료되면 즉시 KS규격으로 채택할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심사의 대외종속화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각종 환경감사 인증을 위한 전문인증기관의 육성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해외 전문기관의 연수를 통해 심사요원을 우선 양성하고 점차 기업내부의 환경감사자 양성 및 기업경영 지도를 위한 전문교육·지도기관을 육성·지정할 필요가 있다.

환경경영 인증 및 환경경영 체제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 환경경영 규격과 환경법 규와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KS허가심사기준에 환경경영체제 점검 항목을 점진적으로 설정하여 4,056개 KS허가업체의 환경경영도입을 촉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ISO의 규격제정 완료시점 이전부터라도 외국의 표준화단체와 규격정보 교류 및 심사원연수 등 업무협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IV. 기후변화협약과 탄소세의 도입

1. 기후변화협약의 추진 배경

기후변화협약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세계적인 기상이변, 사막화의 진전, 극지방의 해빙, 해수면의 상승 및 생태계의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한 협약이다.

이 협약이 체결되게 된 과정을 보면 우선 지구온난화현상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세계기상기후와 유엔환경기구가 공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였다. 이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로 하여금 연구업무를 수행토록 하였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1988년 6월에는 기후변화에 관한 세계회의가 개최되었고 이후 1990년의 2차 기후회의에서는 지구온난화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협약을 채택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기후변화협약은 '94년 3월 21일 발효되었고, 우리나라는 47번째 국가로 가입하였다.

로부터 6차례의 정부간협상회의(INC)를 거친 후 협약문이 작성되었고 1992년 6월 리우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으로 채택 되었다.

IPCC의 연구결과 아직 지구온난화현상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가설단계에 머무르고 있음에도 이에 근거하여 기후변화협약을 채택하게 된 이유는 지구온난화가 설이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인류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재앙을 받게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가설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것은 에너지를 절약하게 되고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게 되는 등 인류에게 많은 도움을 주게 된다.

이러한 논리에 의거 채택된 기후변화협약은 1993년 12월 포르투갈이 50번째로서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1994년 3월 21일에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47번째 국가로 가입하였으며 현재 총가입국수는 118개국이다.

2. 기후변화협약의 규제내용과 제1차 가입국회의의 결과

가. 규제내용

협약문 작성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면서 선·후진국간, 그리고 선진국간에도 논란이 많아 규제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약이 체결되었다.

우선 규제대상 온실가스의 범위에 대해 논란이 일어났다. 선진국들은 지구온난화가설에 의할 경우 온실가스중 이산화탄소의 기여도가 50%에 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는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를 연소시킬때 발생하므로 배출을 규제하기도 용이하다는 점을 들어 먼저 이산화탄소부터 규제하자고 주장하였다. 즉, 화석연료의 사용량을 규제하면 된다는 것이다.

반면에 개도국들은 이산화탄소의 배출만 규제할 경우에는 다른 예기치 못한 현상들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모든 온실가스의 배출을 규제하자고 주장하였다. 물론 이렇게 다른 주장들을 하게된 배경은 각국이 안고 있는 경제적 여건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즉, 선진국들은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정제 내지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개도국들의 경우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더욱 많은 양의 에너지사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한 개도국들은 이산화탄소만 규제할 경우우라도 이제까지

선진국들이 대부분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왔기 때문에 선진국들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됨에 따라 배출규제 목표치를 설정하는 등의 구체적인 규제사항은 협약조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가입국들로 하여금 온실가스의 배출 및 흡수현황에 관한 통계자료를 작성토록 하고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다만 특수약속 적용대상국으로 분류된 국가들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감축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고 있다.

나. 제1차 가입국회의의 결과

금년 3월 28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1차 가입국 총회는 그동안 11차례에 걸친 정부간협상회의(INC)를 통해 협의된 기후변화협약과 관련된 주요 쟁점사항을 의정서 형태로 보다 구체화하려는데 그 근본목적이 있었다. 베를린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선진국 의무의 적정성, 의정서 협상, 공동이행, 기술이전, 상설사무국 소재지, 의사규칙 등이다.

우선 1997년 제3차 당사국 총회시까지 의정서 채택을 목표로 협상을 주도할 실무협상기구를 설치키로 하였다. 본회의에 참석한 당

공동이행제도란 2개국 이상이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달성한 일정 감축분을 사업참여국의 이행실적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사국들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동결한다는 현 협약상의 선진국 의무가 부적절함을 인정, 이를 강화하여 2005년, 2010년, 2020년 등 특정시한사까지의 추가감축목표를 설정기로 했다. 41개국 도서국가연합(AOSIS)은 선진국에 한해서 2005년까지 1990년 수준의 20%를 추가로 감축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정서 초안을 제시하였으며, 독일의 콜 총리는 이와 같은 추가감축안을 전격 수용하겠다고 선언하였다. 한편 미국, 호주 등의 선진국들은 협약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도국의 의무강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2005년 이후에는 개도국도 감축노력에 동참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이들은 개도국의 감축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3단계 전략을 제시하였다. i) 에너지사용기기에 대한 국제적 효율기준을 설정하여 범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기반을 조성하고, ii) 탄소세를 도입

하여 저탄소함유에너지 혹은 청정에너지로의 연료대체를 촉진하며, iii) 국가별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한 쿼타제를 도입하여 전세계의 배출총량을 일정한 수준으로 안정화시킨다는 것이 3단계 전략이다. 그러므로 의정서 협상과정에서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선발개도국에 대해서는 의무강화문제가 강력히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공동이행제도의 도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공동이행제도란 2개국 이상이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달성한 일정 감축분을 사업참여국의 이행실적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이산화탄소 감축여력이 한계에 도달한 선진국들이 상대적으로 감축비용과 여력이 큰 개발도상국에 재정 및 기술을 지원, 공동사업을 함으로써 자국의 감축목표를 저렴한 비용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개도국은 이러한 선진국들의 공동이행제도 도입 주장에 대해 그들의 이산화탄소 감축의무를 개도국에 전가시키려는 교묘한 술책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가입국 회의에서는 의정서협상 종결을 목표로 하는 1997년 제3차 당사국 총회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공동이행에 대한 최종결론을 도출하기로 하였다. 물론

개도국도 희망하는 경우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선진국 내에서만 공동이행 시범사업을 추진하자는데 합의하였다.

공동이행 대상은 온실가스의 배출원과 흡수원을 포함하며 각국 정부의 승인을 전제로 하고 있다. 특히 시험기간 중에는 이행실적인정(Crediting)문제, 즉 시범사업으로 감축된 순배출량을 사업에 참여한 각국에 분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내년도의 OECD가입, 선발개도국으로서의 의무부담 가능성, 산업수준을 고려하여 공동이행의 시범사업 추진을 적극 지지하였다.

그리고 이번 회의에서는 협약 제 4조 5항에 명시되어 있는 선진국의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행현황을 파악하고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로 결정하였다. 특히 선진국의 기술이전현황을 국가 보고서에 포함시키고 가입국회의 시마다 검토하기로 하였다. 또한 협약의 부속기구로 설치된 과학기술부속기구(SUBSTA) 및 협약 이행부속기구(SBI)의 운영지침에 대한 합의가 도출됨에 따라 앞으로는 가입국에 대한 협약의 이행상황 점검과 감시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내년 1월에는 독일의 본에 이들의 상설사무국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주요 쟁점사항중 하나였던 의사정족수 및 의장단 구성문제

우리나라는 내년도 OECD가입, 선발개도국으로의 의무부 담 가능성, 산업수준을 고려하여 공동 이행의 시범 사업추진을 적극 지지하였다.

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함에 따라 제2차 당사국 총회에서 다시 다루기로 했다. 의사정족수의 경우 선진국과 대부분의 개도국은 주요 사안에 대해 3/4을 지지하였으나 산유국 등 일부 개도국이 만장일치를 고집함으로써 타협에 실패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입장이 유사한 국가군의 구분이 두드러졌다. 선진국은 의무강화에 적극적인 EU와 소극적인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으로 대별되었고 개도국은 전향적인 Green 그룹인 일반개도국 및 소도서국가(AOSIS)와 강경반대국인 산유국(OPEC)으로 구분되었다. 우리나라는 수석대표의 연설을 통해 Green 그룹에 동참함을 밝혔다.

3. 탄소세의 도입

가. 탄소세의 개요

주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의 대

부분이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되고 있는 만큼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의 사용량을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탄소세제의 도입이 거론되고 있다.

탄소세(Carbon tax)란 에너지가 포함하는 탄소함유량, 즉 에너지 사용으로부터 발생될 이산화탄소의 양에 따라 부과되는 일종의 물품세(Excise Tax)이다. 즉, 석탄, 카본과 같은 고탄소함유(High Carbon Content)에너지를 가스 등의 저탄소함유(Low Carbon Content)에너지 혹은 수력, 원자력 등의 무탄소함유에너지(Non-Fossil Fuel Energy)로 대체토록 인센티브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탄소세의 부과방식은 일반적으로 생산세와 소비세의 두가지로 구분된다. 소비세의 경우는 최종에너지소비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며 생산세는 1차에너지, 즉 에너지생산과정에 투입되는 모든 에너지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생산세의 경우가 더 포괄적인 방식으로 에너지 전환 부문에 있어서의 효율성 증가에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탄소세 본래 목적에 보다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방식으로 부과하든 탄소세 도입시의 문제점은 주어진 이산화탄소 배출규제목표를 달

성하기 위한 적정수준을 도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탄소세부과에 따른 화석연료 사용량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 효과가 에너지 수요의 가격탄력성, 에너지원간의 대체탄력성, 에너지와 여타 생산요소간의 대체탄력성, 에너지공급량 및 가격의 변화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나. 각국의 추진현황

EU는 1992년 5월 탄소세의 도입을 결정하고 그해 6월에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에서 범선진국 차원에서의 탄소세 도입을 주장하였으나 미국의 반대에 부딪혀 관철되지 못하였다. EU가 도입하기로 한 탄소세의 내용은 1993년에 모든 화석연료에 대해 석유환산 배럴당 3달러를 부과하고 이후 매년 세액을 1달러씩 인상하여 2000년에는 10달러를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EU의 탄소세는 역내에서도 영국의 반발로 시행이 유보되고 있다.

한편 개별국가 차원에서는 덴마크, 네덜란드와 함께 금년 EU에 가입예정인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등이 이미 에너지/탄소세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5개국들의 탄소세 시행효과는 아직까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다만 탄소세율이 높은 스웨덴과 노르웨이에서는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인 열공급업체의 경우 화석연료에서 생화학연료(Bio Fuel)로 에너지를 대체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4.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금번 베를린회의의 결과를 통하여 볼 때 우리나라는 당분간 기후변화협약상의 직접적인 의무는 부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개별적인 이산화탄소 감축노력의 일환으로 에너지이용기기에 대한 최저효율기준 등을 적용하거나 그린라벨 혹은 그린마크제도를 활용할 경우 가전제품 등의 수출에 어느정도 간접적인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내년 OECD

에 가입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협약상의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의정서 협상과정에서 선진국들은 우리나라가 선발개도국으로서 선진국의 감축노력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주장할 것으로 보여 개도국의 특권을 계속해서 향유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어느 정도의 유예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우리나라가 10년간의 유예기간을 확보한다고 하면 2010년까지 2000년 수준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동결하여야 된다는 의무가 주어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소비증가율이 경제성장율을 상회하는 현 추세를 감안하면 비록 유예기간이 확보되더라도 이러한 감축의무의 달성을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

국별 탄소세도입 현황

	세율(달러/탄소톤)	비 고
덴마크	16(수송/서비스) 8(산업)	· 에너지/탄소세 기준 · 에너지집약산업은 면세
핀란드	8	· 93년에 23% 인상 · 자동차연료에 대해서는 고율적용
네덜란드	25	· 92년에 에너지/탄소세로 개편하여 증액
노르웨이	169(휘발유, 가스) 66(디젤/연료유) 47-70(석탄)	
스웨덴	212(수송, 서비스) 53(산업)	· 전력 및 바이오연료 면세 · 93년에 가계부문 증세, 산업부문은 2/3감세 · 에너지집약산업은 철폐내지는 완화(산업부문의 에너지세액은 25~40% 감소)
EU	73(최종년도)	· 에너지/탄소세 기준 · 초기년도(93년) 22달러/탄소톤 과세 · 에너지집약산업은 실시 유예

(자료)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ffairs, Vol 6 No 1, Winter 1994.
(주) EU는 탄소세 지점으로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음.

탄소세 부과시 주요품목에 대한 국별 생산원가 상승율

(단위 : %)

품 목	한 국	미 국	EU
시 멘 트	15.4	15.0	8.8
유 리 제 품	5.3	7.4	2.5
중 이 제 품	3.6	7.9	3.6
화 학 제 품	11.0	11.2	3.5
고무·플라스틱제품	7.1	6.9	1.9
석 유 제 품	39.2	32.6	13.2
섬 유 · 의 복	4.9	4.2	1.3
혁 제 품 · 신 발	3.0	3.3	0.9
제 철 및 제 강	21.1	16.8	8.0
철 강 1 차 제 품	11.5	7.2	5.5
금 속 제 품	5.5	4.7	2.1
전 기 · 전 자	3.1	3.7	1.4
기 계	3.8	3.9	1.2
자동차 및 부품	3.6	3.9	2.2
기 타 수 송 기 계	4.3	4.3	1.3

(자료) 유상의·최종규, 「기후변화협약의 국내산업에 대한 영향과 대책」 산업연구원, 1994.

탄소세부과시 품목별 대선진국 수출감소효과 : 1992년 기준

(단위 : 천달러,%)

품 목	미 국	일 본	EU	합 계
시 멘 트	0	3,714 (8.7)	0	3,714 (8.7)
유 리 제 품	3,340 (9.7)	1,545 (6.5)	965 (8.0)	5,850 (8.3)
중 이 제 품	3,119 (4.8)	748 (3.8)	559 (2.5)	4,426 (4.1)
화 학 제 품	27,182 (15.7)	58,908 (12.8)	48,937 (15.8)	135,028 (14.3)
고무·플라스틱제품	70,404 (19.4)	16,541 (14.8)	61,571 (21.3)	148,516 (19.4)
석 유 제 품	42,343 (35.2)	182,160 (29.8)	1,780 (40.7)	226,282 (30.7)
섬 유 · 의 복	295,953 (10.1)	146,728 (6.7)	171,618 (12.9)	613,669 (9.5)
혁 제 품 · 신 발	151,159 (9.5)	32,486 (6.8)	86,974 (10.6)	270,619 (9.4)
제 철 및 제 강	947 (20.8)	3,717 (12.2)	34 (29.0)	4,698 (13.4)
철 강 1 차 제 품	94,828 (14.6)	130,477 (10.2)	26,855 (17.4)	252,161 (12.1)
금 속 제 품	64,056 (12.5)	26,193 (9.3)	34,962 (11.5)	125,211 (11.4)
전 기 · 전 자	318,809 (6.8)	65,271 (4.4)	125,743 (5.2)	509,822 (5.9)
기 계	200,618 (8.6)	37,652 (6.1)	92,546 (6.8)	330,816 (7.7)
자동차 및 부품	50,974 (5.8)	1,639 (3.8)	29,747 (4.4)	82,360 (5.1)
기 타 수 송 기 계	12,776 (10.3)	2,567 (6.8)	10,758 (7.8)	26,101 (8.7)
합 계	1,336,508 (9.2)	710,345 (9.2)	692,450 (8.8)	2,739,302 (9.1)
15개품목 총수출액	14,492,106	7,733,331	7,843,127	30,068,564

(주) ()내는 감소율임

겠다.

기후변화협약의 규제내용이 구체화되어 전세계적으로 화석연료의 사용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될 경우 우리경제가 받게될 영향은 탄소세 부과시의 효과로 계량화해 볼 수 있다. 현재 EU에서 추진하고 있는 바와 같이 모든 화석연료에 대해 석유기준 배럴당 10달러씩의 탄소세가 부과된다면 산업별로 생산원가는 3~39% 상승하게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원가상승율은 동일한 형태의 탄소세 적용시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들 산업이 받게되는 추가적인 부담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대 선진국 수출은 감소하게 될 것이다.

분석 결과 미국, 일본, EU 등 3개 지역에 대한 우리나라의 주요 15개품목 수출은 9.1%(1992년 기준 2,739백만달러) 감소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석유제품의 수출감소율이 30.7%로 가장 높을 것이며, 고무·플라스틱제품(19.4%), 화학제품(14.3%), 제철 및 제강(13.4%), 철강1차제품(12.1%), 금속제품(11.4%) 등의 수출도 10%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금액기준으로는 섬유·의복(614백만달러), 전기·전자(510백만달러), 기계(331백만달러) 등의 수출이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5. 대응방안

가. 에너지절약형으로의 산업구조 전환

기후변화협약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베를린회의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산화탄소 배출규제의 강화 조짐은 선진국의 개별적인 에너지수요관리정책, 탄소세, 공동이행제도 등을 통해서 조만간 그 영향이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에너지집약적 산업구조를 지닌 우리나라로서는 다른 어느나라보다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더욱이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배출규제 대상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형 및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 신속히 전환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나. 제도적인 대응체제의 조기구축

기후변화협약과 관련된 국내법령 및 제도를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우선 국내환경기준 및 배출기준을 재검토하고 오염유발을 조장하는 각종 보조금 및 규제를 철폐해야 하겠다. 그리고 환경·에너지 감사제도, 에너지효율등급제, 고효율에너지기기에 대한 정부의 우선구매, 환경·에너지 관련기술 및

이산화탄소

배출규제의 강화 조짐은 선진국의 개별적인 에너지 수요관리정책, 탄소세, 공동이행제도 등을 통해서 조만간 그 영향이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

제품의 국제규격화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 구체적인 국가행동계획의 수립

우리나라에 적용될 가능성이 큰 배출규제 시나리오별로 규제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행동계획은 단기, 중기, 장기 등 단계적으로 나누어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예를 들어 중·단기적으로는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와 같이 '후회없는 정책(No-regrets Policy)', 정책목표가 온실가스 저감 뿐만 아니라 고용창출 및 국가경쟁력 제고 등도 포함되는 종합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궁극적인 규제목표 달성을 위해 강력하고 효율적인 조세 및 재정정책의 도입도 적극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라. 통합자원계획하에서의 에너지수급체계 구축

공급위주의 에너지정책에서 탈피하여 에너지사용의 사회적 비용을 감안한 통합자원계획하에서의 중장기 에너지수급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전력부문의 경우는 강력한 에너지 수요관리정책이 필요하며 또한 청정에너지의 공급을 대폭 확대해 나가야 하겠다.

V. 요약 및 결론

1993년말 UR이 타결되자마자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차기라운드 에 집중되기 시작하였다. 우선적으로 등장한 것이 환경문제와 무역을 연계하는 이른바 그린라운드였다.

사실 지구환경이 빠른 속도로 파괴되고 있다는 징후가 속속 나타남에 따라 범세계적인 차원에서의 환경보전노력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로써 국제환경규제는 날로 강화되고 있으며 환경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역규제란 수단을 동원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 환경보전과 자유무역양자의 개념이 충돌할 가능성은 높아만 가고 있다.

그러나 무역·환경의 연계문제가 순수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달리 해석될 수도 있다. 신무역질서를 주관하는 WTO체제의 출범과 더불어 선진국들, 특히 미국의 경우 환

경요인을 자국산업의 경쟁력 회복과 비교우위 확보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를 다분히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돌이켜 보건데 과거 GATT 체제하에서 1960년대까지는 높은 관세율이 자국 및 세계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최대의 걸림돌이라고 선진국들간에 인식을 같이하였기에 6차례에 걸친 다자간 무역협상, 즉 라운드를 통해 관세인하에 주력해왔다. 이후 비관세장벽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등장하자 7번째 라운드인 동경라운드를 열어 이에 대한 규범을 제정한 바 있다. 이로써 공산품에 대한 자유무역의 틀이 마련되자 1980년대 중반부터는 그 대상을 농산물과 서비스부문에까지 확대하기 위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벌인 것이다. UR의 타결로 농산물이건 서비스가건 제품(Product)에 대해서는 무역의 자유화가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남은 대상은 무엇이겠는가? 선진국들은 생산단계(Production)에서의 공정경쟁을 주장하고 있다. 환경문제와 더불어 노동, 경쟁, 기술 등 생산요소적 성격을 가진 요인들을 무역과 연계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에서 이러한 선진국들의 주장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WTO 시대에서 환경-무역 논의의 초점

일반적인 무역규제나 국제경쟁력의 약화와는 차원을 달리하기 때문에 환경장벽의 극복여부가 우리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관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은 생산공정과 관련된 PPMs, ISO 14000 시리즈 등에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환경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국제환경규제가 앞으로도 강화될 것은 자명하다고 하겠다. 국제환경규제의 수단으로 무역규제가 사용되고 있는 만큼 수출의존도가 높고 아직은 경제규모에서 중위권에 있는 우리나라는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공정무역의 대상범위가 확대되면 제조공정 및 기술수준면에서 선진국에 비해 전반적으로 뒤떨어져 있는 우리 산업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수출 측면에서 보면 환경을 이유로 한 무역장벽이 일반적인 무역규제나 국제경쟁력의 약화와는 차원을 달리하기 때문에 환경장벽의 극복여부가 우리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관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국제환경규제 강화가 국내 환경질의 개선을 촉진시킨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주게 된다. 쾌적한 환경은 인간생활의 기본적인 요소일뿐만 아니라 소득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우리국민들이 환경에 부여하는 가치도 증대되고 있어 환경질의 개선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편익은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제 국제환경규제는 우리가 넘어야 할 또 하나의 과제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은 이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한편 긍정적인 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어 나가는 길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부터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기업들은 이제 존립의 차원에서 환경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기업전략이 해외에서는 물론 국내에서도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ISO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기획단계에서부터 환경요인을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공해방지비 등 환경관련 부담을 추가적인 비용으로만 여겨온 관행을 지양하고 기업성장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